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239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우형찬 의원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우형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입학지원자의 책임이 없는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과오납의 경우에만 입학선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, 실제 입학 전형 과정에서는 천재지변, 질병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조례에 반환 근거가 없어 지원자와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부담이

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,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입학선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학선발수수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39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에게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의 반환 조건에 “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”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사립 초등학교는¹⁾ 입학지원자에게 학생 추첨 및 입학설명회, 홍보

1) 조례는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사립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정하고 있음. 다만, 실질적으로 현재 모든 사립유치원은 조례 제2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」 제2조(징수금액) 선발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(유치원)의 장이 정한다. 다만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.

자료 제작·배포를 비롯해 입학전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²⁾ 위탁 접수 대행 수수료³⁾ 등을 입학선발수수료의 형태로 징수합니다.

- 참고로 2026학년도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선발수수료(전형료)는 교당 3만원이며,⁴⁾ 관내 사립초등학교는 전년도(2025학년도)에 신입생 모집 전형 시행을 통해 학교별로 211만원에서 4,971만원까지⁵⁾ 전형료 수입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입학지원자가 사립초등학교에 납부한 입학선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학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존재했습니다.
- 특히, 현행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제도에서 입학지원자는 천재지변이나 질병, 사고 등 본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 규정이 부재하여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
- 즉, 현행 조례는 입학선발수수료 반환 의무 발생 사유를 “과오납”으로 한정함으로써 사립초등학교 등의 적극적인 수수료 반환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바, 적극행정 유도와 주민 권리 보호 관점에서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- 더욱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선발수수료 반환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」에⁶⁾ 따라 징수하는 특성화

2) 전민희 기자(2022.12.21.), [단독]사립초, 코로나에 경쟁률 급등…전형료 수입 5배 늘었다
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27407> (검색일 2025-12-09)

3) 시의원(박상혁 위원장) 요구자료 제출(2077번) (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-18704, 2025.11.13.) [붙임 3] 참조

4)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국·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(2025.11.3. 게시)

https://www.kspsesa.com/service/brd/brd_det.do?pBoardCd=NOTI_A&pBoardNum=9&pageIndex=1&pageSize=10&pSearchType=1&pSearchText=&pMid= (검색일 2025-12-09)

5) 시의원(박상혁 위원장) 요구자료 제출(2077번) (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-18704, 2025.11.13.) [붙임 3] 참조

6) 「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」 제5조(전형료 반환)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2. 입학전형 기관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전형료 전액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전형료 전액
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

중학교 등의 입학전형료나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2조의3에⁷⁾ 근거하여 징수하는 대학 입학전형료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하게 반환 사유가 제한적입니다.

-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과오납 이외에 입학지원자의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전형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입학전형 운영의 합리성 향상과 입학지원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.
 - 구체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학전형이 추진되는 기간 중 ① 학교가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경우나 ② 학교의 귀책 사유로 입학전형 시행이 어려워진 경우, ③ 학생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학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입학지원자에게 입학선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
 - 더 나아가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은 입학선발수수료 환급 여부에 관해 사립초등학교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적극적으로 수수료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.
-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.⁸⁾

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전형료 전액

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
7)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2조의3(입학전형료)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
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
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
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
8)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천재지변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된 수수료의
전부를 반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징수방법) ① (생 략) ② 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 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. <단서 신설>	제5조(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천재지변, 질병 등</u> <u>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</u> <u>납입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.</u>